2016. 6. 7. 제정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① 이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전자금융서비스(기업뱅킹, 기업뱅킹 Light, 기업모바일뱅킹, 종합자금관리(1Q bank | CMS 상품군) 등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함),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매체"라 함은 은행이 이용자의 전자금융 거래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교부하는 접근매체로서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 등을 말합니다.
2.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서명키를 담고 있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3. "사용자 비밀번호"라 함은 은행이 이용자의 전자금융 거래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밀번호로서 영업점 혹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4. "마스터사용자"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업무권한 및 계좌권한의 전부를 가지고 다른 사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일반사용자"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6. 기타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서비스 종류)

이 약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자금이체, 계좌의 신규 및 해지, 대출, 외환, 전자결제, 공과금납부, 자금집금, 본지사통합관리, 통합자금관리 등이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적장치마다 서비스 종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신청, 해지 및 추가)

①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기존의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서비스 상에서의 신청 및 확인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한 서비스 매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154호(2016.4.18)

제 5 조 (사용자의 신규, 변경 및 해지)

①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스터사용자 혹은 일반사용자를 신규, 변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마스터사용자는 서비스에서 일반사용자를 신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에서 신규한 일반사용자는 은행을 통해 보안매체를 발급받지 않는 한 단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내부통제의 이용 및 범위)

①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마스터사용자를 신규 지정함으로써 내부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사용자가 일반사용자의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일반사용자를 통제대상자로 편입 및 해제
2. 대상자가 서비스에서 조회 할 수 있는 계좌 설정
3.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체한도 지정
4. 대상자가 이용 가능한 출금계좌, 입금계좌의 지정
5. 기타 고객의 전자금융 통제를 위하여 은행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②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스터사용자를 해지하는 경우 마스터사용자의 통제대상자인 일반사용자는 마스터사용자가 최종으로 설정한 권한으로 통제대상자에서 해제되어 단독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 7 조(결재서비스의 이용)

① 이용자는 영업점에서 신규한 마스터사용자를 통해 결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사용자는 서비스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작성하는 등록자와 작성된 거래를 결재하는 결재자를 지정하여 다단계 결재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지시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결재자로 지정된 사용자는 결재비밀번호 혹은 보안매체(OTP)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스터사용자를 해지하는 경우 마스터사용자가 설정한 모든 결재서비스는 자동으로 삭제되며, 결재 진행 중인 금융거래도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확인)

① "기본약관" 제 4 조 1 항에 의하여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 체결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관련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본인으로 인정합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 혹은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은행이 본인확인을 위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기업모바일뱅킹 :
   사용자 ID, 사용자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154호(2016.4.18)

2. 기업인터넷뱅킹 :

사용자 ID, 사용자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제 9 조 (계좌의 개설 및 해지)

① 이용자는 본인명의 자유입출금식예금(신탁)계좌(이하 '근거계좌'라 함)를 근거로 하여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함)를 신규개설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연결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실명확인된 연결계좌와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서비스를 통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기가 도래하여 상담원을 통해 재예치(일부 재예치 포함)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해지된 금액은 본인의 실명확인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④ 실명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연결계좌의 해지금액은 근거계좌로 입금됩니다

⑤ 근거계좌는 연결계좌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치기 이전까지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⑥ 인터넷을 통한 예금 또는 적금의 해지 시에는 은행은 ARS 인증을 이용자확인방법으로 추가합니다.

제 10 조 (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①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는 이용자가 본인명의의 자유입출금식예금(신탁) 계좌중에서 은행에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부통제를 이용할 경우 마스터사용자가 대상자에게 서비스에서 출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입금계좌를 은행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통제를 이용할 경우 마스터사용자가 대상자에게 서비스에서 입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자금이체한도)

① 이용자는 은행이 <표 1-1> 과 <표 1-2> 에서 정한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와 거래이용수단에 따라 계좌이체 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표 1-1: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 >

(단위: 백만원)

구 분			보안등급별 기본한도		영업점장 승인
			1 등급	2 등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개인	1 회	100	10	제한없음
		1 일	500	10	제한없음
	법인	1 회	1,000		제한없음
		1 일	5,000		제한없음
폰뱅킹	개인	1 회	50	10	제한없음
		1 일	250	10	제한없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154호(2016.4.18)

	법인	1 회	100		제한없음
		1 일	500		제한없음

* 1 등급 한도 이용고객은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모바일뱅킹은 기업인터넷뱅킹과 합산하여 한도 관리합니다.

< 표 1-2: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 >

거래이용수단	보안등급
OTP 발생기 + 공인인증서	1 등 급

② 이용자가 기업뱅킹을 가입한 경우 이용자는 영업점에서 회사별 1 일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회사별 1 일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영업점 혹은 서비스에서 사용자 별로 1 회/1 일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기업뱅킹 Light 를 가입한 경우 영업점에서 1 회/1 일 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기본약관'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에 불구하고 소정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처리하며, 그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현금화된 예금잔액(대출한도 포함)에 한합니다.
2. 결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최종결재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결재비밀번호 혹은 일회용비밀번호(OTP) 및 공인인증서가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때 거래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이용자는 수시로 잔액조회 또는 통장정리 등을 통하여 거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본지사통합관리)

① 본지사통합관리는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본지사통합관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제 3 조의 서비스의 종류를 따릅니다.

③ 본지사통합관리를 이용하려는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법인등록번호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본사가 지사를 대신하여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사가 직접 처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며, 지사는 본사나 은행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 14 조 (종합자금관리)

① 종합자금관리는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종합자금관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은행이 이용자별로 맞춤형태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거래화면을 통한 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 및 펌뱅킹서비스
2.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은행의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명세 제공, 자행 및 타행에 개설된 계좌의 자금을 자행의 모계좌로 집금하는 통합계좌관리 서비스

3. 이용자의 ERP 시스템과 각종 금융거래데이터를 연계하는 서비스
4. 전 1 호, 2 호, 3 호의 거래내용에 대한 조회 서비스
5. 전 1 호, 2 호, 3 호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③ 이용자는 종합자금관리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 회선, 서버 또는 PC, VPN 또는 전용회선 등의 시스템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동 시스템은 보안상 안전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빅넷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은행과 이용자가 협조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④ 종합자금관리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구축한 부분에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는 이용자가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은행이 제공한 프로그램에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이 관리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5 조 (자금집금)

① 자금집금은 이용자가 당행 본인명의 계좌들(이하 '자계좌'라 함)에서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계좌(이하 '모계좌'라 함)로 모으는 서비스입니다.

② 제 1 항의 당행 자계좌 및 모계좌는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직접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영업점에 자계좌 및 모계좌를 등록하여 자금집금을 하는 업무는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금집금 업무는 영업점에 수수료출금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제 16 조 (이용 수수료)

이용수수료는<표 2>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이용자에게 각종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동출금하기로 합니다.

<표 2: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수수료>

구분	당행이체	타행이체	비고
기업인터넷뱅킹 기업모바일뱅킹	무료	500 원	은행 고객등급별 수수료 감면 제공

제 17 조 (서비스 별 이용시간)

서비스 별 이용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 18 조 (비밀번호 및 일회용비밀번호(OTP)의 관리)

①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비밀번호는 서비스 신청 시 지급되는 보안매체와 함께 은행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유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불가능하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에서 비밀번호를 초기화 하여야 합니다.

③ 보안매체의 분실 또는 타인에게 보안매체의 내용이 유출되었다고 판단시 즉시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고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에서 보안매체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제 19 조 (서비스의 제한)

은행은 다음의 경우 당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약관'의 "제 14 조(거래의 제한) 제 1 항 및 제 2 항의 각호"에 해당되었을 때
2. 본인확인을 위한 사용자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 회,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3 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또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를 사용하는 경우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10 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제 20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의 영업점 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변경, 해지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은 변경, 해지됩니다.

② 각종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약관변경)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 22 조 (합의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